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1886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4. 접수 제2454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30.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가 원고가 생산하는 창호 등 물품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인증을 받아주는 것 등을 조건으로 특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고가 생산한 창호에 대한 친환경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3. 거부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을 해제하고 2020. 8. 11. 소외 회사와 D를 상대로 위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취지대로 2020. 8. 19.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2364호 지급명령이 내려져 D에 대하여 2020. 9. 26. 확정되었다.

라. 한편, D는 2019. 12. 23. 피고와,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계약 당시 시가는 3억 원 정도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 호증 , 을 제 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D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특판 대리점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보증금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9.

11. 27.자 친환경 인증 신청에 대하여 2020. 3.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거부처분이 있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거부처분 사유가 소외 회사의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기술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설령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I의 부탁으로 2017. 9. 29. I의 아들인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 이자 약정 없이 2017. 12. 31.을 변제기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선행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2018년 총 400만 원, 2019년 총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는데, 위 이자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H 또는 소외 회사 명의로 입금되었고, 이자 총액이 연 6%의 상사이율에 의한 이자 연 360만 원에 근접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23. 소외 회사에 이자율 연 18%, 변제기 2020. 12. 23.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여유가 있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D의 채무관계를 의심할 만한 등기 내역은 없었다.

4) 피고는 선행 근저당권 설정등기 당시 D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이 사건 계약에 이를 때까지도 주로 I만을 상대하며 금전거래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계약이 D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옳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